

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8년10월 일

제출자 : 제천시장

1. 제안이유

- 납골당 사용료를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하는 사항이 불합리하여 이를 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토록개정

2. 주요골자

- 제9조 (사용료및관리비)
 - 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⇒ 납입고지서에 의거징수

3. 근거법령

- 매장및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

- 붙 임 : 1. 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
2. 신 구조문 대비표
3. 기타참고자료

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제천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사용료및관리비)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“별표”의 구분에 따라 납골당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허가신청시 “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”를 “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한다”로 한다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사용료 및 관리비)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"별 표"의 구분에 따라 납골당의 사 용료 및 관리비를 허가 신청시 <u>제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.</u>	제9조(사용료 및 관리비)..... <u>납입고지서에 의거 징수한다.</u>